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68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수진·김문수·송옥주

서영교 · 김준혁 · 김성환

김정호 · 서미화 · 추미애

김 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 ·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 레가 다수 존재함.

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	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	②
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	
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	
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	
류대책협의회의 협의 · 조정을	
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(이하	
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	
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	
게 통보하여야 한다. <후단 신	
<u>설></u>	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
	에도 또한 같다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